

과태료 부과기준(제4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·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1) 가중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, 정도가 중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) 위반 행위자가 처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	법	500		

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	제54조제1항 제1호			
나.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·보수·보강 등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·보관·유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3항 제1호	100		
다.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3항 제2호	100		
라.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3항 제3호	100		
마.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3항 제4호	100		
바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,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2호	500	750	1,000
사.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3항 제5호	100	150	200
아.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3호	500	750	1,000
자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54조제2항 제1호	300		
차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3항 제6호	100	150	200
카.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4호	500	750	1,000
타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·보강 등	법	500	750	1,000

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제54조제1항 제5호			
파.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·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,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6호	500		
하.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·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3항 제7호	100		
거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54조제2항 제2호	300		
너. 법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7호	500		
더.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8호	500		
러.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	법 제54조제2항 제3호	300		
머.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·확인을 받지 않거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2항 제4호	300		
버.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9호	500		
서.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3항 제8호	100		
어.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3항 제9호	100	150	200

저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3항 제10호	100
처.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4조제3항 제11호	100
커.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54조제2항 제5호	300
터.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 은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10호	500